



**Vol. 02**

2022.02.17.

#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545-5115

F. 02-3444-5115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 1 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 2 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 3 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 3 본부 권경아전임 kakwon@hjcustoms.co.kr

##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원 사례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I. 법령 개정사항**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일부 개정****(1) 개정이유**

식품용기 등 국민안전 밀접품목의 신규지정 요구 및 5년마다 개정되는 HSK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변경, 삭제되는 HSK 10단위별 세관장확인 지정사항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HSK 기준 품목 조정	HSK 2022 반영 및 기관 추가지정요청 반영 통해 HSK 기준 세관장확인물품 수출·수입품 목 추가, 삭제로 118개 순감 - 수출(추가 190개, 삭제 176개) - 수입(추가 1,033개, 삭제 1,176개) - 총 품목(HSK 기준) : 6,152개 → 6,034개
요건면제물품 규정 마련	요건면제물품 정의 신설,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요건면제물품의 요건신청방법 등 규정
세관장확인생략 규정 명확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 면제물품이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요건면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확인을 생략도록 규정 명확화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 규정	세관장확인 생략 제도 이용자가 생략 대상법령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공고한 내용을 고시 별표에 규정(별표5)
부칙 신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물품 중 자동차용 타이어(신차 제조용 8개 세번)은 2022년 7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는 내용 등에 대한 부칙 신설

**(3) 시행일**

'22.1.1.

**I. 법령 개정사항****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1) 개정이유**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정산업체의 신뢰 보호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및 현장 방문시 사전통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 절차 조항 삭제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21년까지만 운영되고 이후 폐지됨에 따라 제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제18조의2 ~ 제18조의8) 삭제 및 기타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련 조항 삭제
기존 정산업체 특례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정산업체는 제5조(공인등급) 적용 시 1차에 한하여 종전 고시에 따라 공인등급 상향조건(정산결과가 우수한 업체) 적용</li> <li>- '21년 정산업체는 '22년 정기자체평가서 제출 면제</li> <li>- 업체 신청에 의한 통관적법성 심사 순연</li> </ul>
현장방문시 사전통보 및 결과통지 규정 마련	AEO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 결과통지 규정 신설 및 AEO 공인업체 현장 방문 점검 시 사전통보 및 연기, 결과통지 규정 신설

**(3) 시행일**

'22.1.1.

**I. 법령 개정사항****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1) 개정이유**

FTA관세법 개정사항 및 발효 예정인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FTA관세법 개정사항 등 반영하여 조문 정비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 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45일)됨에 따라 사후적용 심사기준에 반영.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효 대비하여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
원산지 간이확인 적용대상 품목 확대	인스턴트커피, 콘택트렌즈 등 주요 수출품목 49개(HS번호 10단위 기준)를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
원산지증명 및 협정관세 적용 제도 개선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방지를 위해 자재명세서(BOM) 표준서식 마련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현지확인대상 해제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도 발급신청 취하 허용

**(3) 시행일**

'22.1.1.

---

## I. 법령 개정사항

###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전자민원창구 처리업무 신설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에 관한 업무, 제한물질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서류 규정 명확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도록 함.

#### (3) 시행일

'22.1.10.

## I. 법령 개정사항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독성가스 범위 신설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를 독성가스로 하고, 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독성가스가 법률의 위임에 따른 독성가스임을 명확화
수입검사 생략대상 용기 확인 의무화	최대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용기에 대해서 수입검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검사를 생략하는 용기에 대한 확인 의무화
정기검사 규정 정비	고압가스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가 정기검사와 종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천재지변·재난 등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3) 시행일

'22.1.17.

## I. 법령 개정사항

## 6.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

## (1) 개정이유

거짓 등의 방법으로 허가·인증 등을 받거나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제조·수입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시 과징금 부과금액 조항 신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제조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조허가를 받아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품목의 제조금지,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u>위반 품목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u> 정함.
신속 집행을 위한 판매 중지명령 권한 위임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나 허가·인증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u>판매중지명령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u> .

## (3) 시행일

'22.1.21.

## I. 법령 개정사항

##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이유

시판 후 조사의 절차·방법, 봉함 대상 의료기기의 봉함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 및 결과 보고	시판 후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기의 시판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판 후 조사결과 보고를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일부터 최초 1년까지는 6개월마다, 1년 이후에는 1년마다 하도록 함.
봉함 대상 의료기기 및 봉함 방법 마련	봉함 대상 의료기기를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멀균 포장된 제품, 개봉하여 유통하는 경우에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제품인 주사기, 주사침, 콘택트렌즈 등으로 정함.
	봉함 방법은 용기 또는 봉함을 뜯지 않고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업의 시설기준 등 완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작업소, 시험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제조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소 시설기준을 완화함.

## (3) 시행일

'22.1.21.

## II. 입안 예고

## 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허보세구역 위험물품을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된 물품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관세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 선 구입물품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관세환급청구권 기산일을 ‘ <u>환불된 날</u> ’로 규정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관세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운임 등에 대해 그 <u>비용</u> 부담주체에 상관없이 과세가격에 <u>가산할</u> 수 있도록 부담주체 요건 삭제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납부지연가산세율을 현행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시 조사사항 규정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u>덤핑방지·상계조치물품의 수입</u> 및 <u>징수실적</u> 등을 조사할 수 있음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수입신고 수리전 제출에서 <u>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u>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까지 제출 허용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구체화	허가·승인 필요한 <u>위험물 정의</u> 를 구체화하고, 보세화물 보관·판매·관리를 위한 <u>시설·장비</u> <u>요건 추가</u>
장외작업 완료보고 기한 완화	보세공장 외 작업 완료보고 기한을 ‘작업이 종료된 때’에서 ‘ <u>허가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u> ’로 완화

---

## II. 입안 예고

###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관세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구체화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예외사유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에도 불구하고 <u>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 규정</u>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규모 · 특성,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세액 신고 · 납부의 성실도 등에 비추어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II. 입안 예고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1)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규정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함.
원산지 조사방법 규정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거나,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함.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 물품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건물을 포함시킴.

---

## II. 입안 예고

###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바젤협약 금지 개정안(유해폐기물의 OECD, EU, 리히텐슈타인 외 국가로의 수출금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 포괄 수출입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폐기물 포괄 수출입 관련 보증보험 관련 가입방식 개선	폐기물을 한꺼번에 수출입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할 때마다 관세청에 수입신고 10일 전까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바젤협약 금지 개정안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수출 금지 규정 명확화	바젤협약 수출금지 개정안 조문인 “OECD, EU, 리히텐슈타인에서 OECD, EU, 리히텐슈타인 외 국가로 유해폐기물 수출금지”에 맞춰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 III. 조세심판원 사례

1. 쟁점물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제 8543 호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 8486 호로 분류할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55건으로 RF power generator(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Matching controller(이하 “쟁점②물품”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4.31-9010호, 제8543.70-9090호 및 9032.89-9090호 등(기본관세율 8%)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을 품목번호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86.90-201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486호”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총합계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이 비록 건식 식각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라고 하더라도, 제 8543 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을 부분품으로 보아 제 8486.90 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을 제 8543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 결정일

2021.12.20. (조심 2021 관 0113)

---

### III. 조세심판원 사례

2. 청구법인들이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구매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으로 고가신고 하였고, 이것이 쟁점물품의 덤픽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라고 보아 경정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① 및 청구법인②(이하 '청구법인들')는 쟁점공급자가 생산한 쟁점물품①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7716.33-3000호(WTO협정세율 0%), 또는 제7226.33-4000호(WTO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범칙조사를 통해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에 부과되는 덤픽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 최저수출가격으로 고가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재산정한 뒤 관세율 28.23%(WTO협정세율 0% + 덤픽방지관세율 28.23%)를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과세전통지를 누락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고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들에게 선행처분과 같은 금액을 각 재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함.

다. 검찰청은 처분청이 고발한 쟁점처분①의 관세법 위반 혐의 외에 쟁점물품에 관한 청구법인들의 추가 범행을 인지하고, 처분청에 수입신고건(이하 '쟁점물품②')의 관세 포탈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을 의뢰함.

라. 이에 처분청은 추가된 관세법 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청구법인들을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법인들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과 쟁점처분②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함.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 가공된 가격으로 보여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덤픽방지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3) 결정일

2021.12.24. (조심2020관0115)

---

### III. 조세심판원 사례

3. 쟁점물을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 284건으로 터보분자펌프(TURBO MOLECULAR PUMP, 이하 “쟁점물을” 또는 “TMP”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기타 진공펌프 중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이하 “반도체용”이라 한다)이 분류되는 관세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01.10-9010호(WTO 양허관세율 0.8~2.3%, 기본관세율 3%)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사용하고자 주문 제작한 것이므로 쟁점물을 반도체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7년 HSK 개정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을 ‘기타 진공펌프 중 기타의 것’이 분류되는 HSK 제8414.10-9090호(WTO 양허관세율 6%, 기본관세율 8%)로, 2017년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을 개정된 HSK에 따라 ‘기타 진공펌프 중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이하 “평판디스플레이용”이라 한다)이 분류되는 HSK 제8414.10-9020호(WTO 양허관세율 2~4%)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가산세 합계 000원 총합계 00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을 수입신고 이전에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주문되어 특정 업체 및 장비에 맞게 특수하게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쟁점물을 반도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물을 평판디스플레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3) 결정일

2021.12.27. (조심2021관0026)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1. 시크릿 셀카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시크릿 셀카폰 ; JJ CELL :: 중국
물품 설명	홀로그램 뷰어를 티아라폰 케이스에 끼워 10가지 시크릿 쥬쥬 영상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휴대폰 모양의 장 난감으로, 티아라 장식(3종)과 터치펜 등이 하나의 포장형 태로 제시
HS CODE	- 변경 전 : 제9504.50-9000호 - 변경 후 : 제9503.00-3919호
변경 사유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 기능이 비디오 게임-플레이를 수행하 도록 의도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제9503.00-3919호로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1.1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2. VESDA Laser PLUS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VESDA(Very Early Smoke Detecting Appratus) LaserPLUS (VLP-002) 2. Gas Detector(H2S/CO/O2) ;Single Gas Clip(SGC-H, SGC-C, SGC-O)
물품 설명	자동 화재경보시스템에 설치되어 미세한 연기입자를 감지하여 측정값을 숫자와 눈금으로 표시하는 공기흡입형 연기감지기
HS CODE	- 변경 전 : ①제8531.10-2000호, ②제8531.10-3000호 - 변경 후 : 제9027.10-0000호
변경 사유	미세한 가스나 연기입자를 감지하여 측정값을 숫자나 눈금으로 표시하는 기기이므로 제9027.10-0000호로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1.1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3. GRANITE BAS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GRANITE BASE(Machinery parts)
물품 설명	광학카메라를 통해 TFT-LCD 외형상의 결함 등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장비에 장착되는 특정한 형상의 석(石)정반
HS CODE	- 변경 전 : 제9033.00-0000호 - 변경 후 : 제9031.90-9000호
변경 사유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정반과는 달리 특정한 검사장비에만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특수정반이므로 제9031.90-9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시행일**

'21.1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4. Decorative Paper Sheet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Chinese decorative paper sheets ; 1,225 mm×2,445 mm×0.38 mm ; CHINA
물품 설명	멜라민 수지를 함침한 종이와 폐놀수지를 함침한 종이를 열프레스로 적층한 시트상
HS CODE	- 변경 전 : 제4811.59-0000호 - 변경 후 : 제3921.90-9030호
변경 사유	합성수지를 함침한 종이로 구성된 것으로 접을 때 부서지는 플라스틱의 단단한 특성을 가진 시트이므로 제3921.90-903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1.1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5. Instrument Clust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CLUSTER ASM-INST ; 95375163 2. Instrument meter cluster; SU EV 3. Instrument meter cluster; Tobe EV 4. 자동차 계기판; 0 263 650 080
물품 설명	차량 운전자에게 주행속도나 엔진회전속도(RPM) 등의 정보를 계기로 표시해주는 계기판(Cluster)으로, 주기판(Main PCB)과 LCD 모듈(12.3인치), 프레임,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음
HS CODE	- 변경 전 : 제8708.29-0000호 - 변경 후 : 제9029.20-1090호
변경 사유	주기능이 차량의 주행속도와 엔진회전속도를 계기로 표시하는 물품이므로 제9029.20-109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1.1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6. DIAL PANEL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DIAL SP TA FU TE 150MPH K8000 ; A2C53402579 (XM STD SORRENTO) ; 3D DIAL PANEL 2. DIAL PANEL ; B052GMYF02 (JB PRIDE) ; 2D DIAL PANEL
물품 설명	차량용 계기판(Cluster)에 전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지침판
HS CODE	- 변경 전 : 제8708.29-0000호 - 변경 후 : 제9029.90-0000호
변경 사유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로 분류되는 차량용 계기판(Cluster)에 전용되는 필수 부품이므로 제9029.90-0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1.1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7. Carophy II Pink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animal origin; Carophyll Pink; FRANCE
물품 설명	합성에 의해 얻어진 아스타잔틴(Astaxanthin), 옥수수 전분, 비즈왁스, 토코페롤 등으로 조성된 적색계 분말상의 착색제 조제품
HS CODE	- 변경 전 : 제3203.00-3000호 - 변경 후 : 제3204.19-9000호
변경 사유	합성에 의해 얻어진 합성유기착색제(아스타잔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제3204.19-9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시행일

'21.1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8. Hydroxypropyl- $\beta$ -cyclodextrin(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Hydroxypropyl- $\beta$ -cyclodextrin; (종전 공문: 품목분류과-101615 2004.9.23.) 2. Hydroxypropyl- $\beta$ -cyclodextrin; (종전 공문: 분석 47260-511 1999.5.18.)
물품 설명	화학적으로 단일한 Hydroxypropyl- $\beta$ -cyclodextrin과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조제품
HS CODE	- 변경 전 : 제3913.90-9090호 - 변경 후 : ①제2940.00-2090호, ②제3824.99-9090호
변경 사유	① 화학적으로 단일한 당류인 $\beta$ -cyclodextrin의 에테르 화 합물이므로 제2940.00-2090호에 분류하며, ② Hydroxypropyl- $\beta$ -cyclodextrin를 주성분으로 하여 화장 품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제 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1.1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9.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l'il HYBRID 액상 카트리지
물품 설명	용액이 충전된 일회성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충전된 용액 소진시 폐기)
HS CODE	- 변경 전 : 제8543.70-4090호 - 변경 후 : 제3824.99-9049호
변경 사유	전자담배 용액과 전기저항체 등이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이 충전된 용액에 있다고 보아 제3824.99-9049호에 분류(제2021년 제3회 및 제5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1.1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10. Coconut Water 등 7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Beverage, non-alcoholic; SALUTTI COCONUT WATER WITHOUT PULP; THAILND 2. Beverage, non-alcoholic; SALUTTI COCONUT WAKER WITH PULP; THAILND 3. Coconut water Young coconut water 4. Coconut Water 5. Coconut water Delite
물품 설명	그린 코코넛으로부터 얻어진 코코넛 워터(코코넛 주스)
HS CODE	- 변경 전 : 제2202.90-9000호 - 변경 후 : 제2009.89-1090호
변경 사유	WCO 제5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6.10)의 국내 수용에 따른 변경대상 중 누락 건에 대한 추가 변경 (2018년 제7회 및 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1.1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11. COCONUT DRINK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1.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FLAVORED DRINK WITH NATA DE COCO; THAILND 2. Beverage, non-alcoholic; La Natural coco splash; PHIL.R 3. Beverage, non-alcoholic; MALEE COCO; THAILND 4. Beverage, non-alcoholic; Coconut drink 5. Beverage, non-alcoholic ; FOCO COCONUT JUICE;520ml/can ; For beverage ; Coconut water 60%, sugar 6%, young coconut meat dice 4.5%, water ; THAILND
물품 설명	코코넛 워터를 10% 이상 함유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HS CODE	- 변경 전 : ①,②제2202.99-9000호 ③~⑤제2202.90-9000호 - 변경 후 : 제2202.99-2000호
변경 사유	제2009호의 과실주스에 해당하는 코코넛워터를 10% 이상 함유한 과실음료이므로 제2202.99-2000호에 분류(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1.12.28.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12. Dry vitamin D3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C12

구분	내용
품명	Dry vitamin D3 100 CWS/AM ; SWISS
물품 설명	비타민 D3, 토콜페롤, MCT오일, 아라비아 검, 자당, 옥수수 전분 등으로 구성된 미황생 과립상
HS CODE	- 변경 전 : 제2936.29-2000호 - 변경 후 : 제2106.90-9099호
변경 사유	WCO 제68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1.9)의 국내 수용에 따른 변경(제2021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1.12.28.

---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재개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간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CEPA 개선협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19.6월 이후 코로나 등의 이유로 2년반 이상 중단된 CEPA 공식협상을 2월 중 개최하여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 [인도 시장접근 개선]

여타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한-인도 CEPA는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수출 활용률이 41.7%('15~'19년 평균)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자유화율: (인도측) 품목수 67.9%, 수입액 66.6% / (우리측) 품목수 86.5%, 수입액 91.7%

\*\* 다수의 품목에 결합기준(역내부가가치(RVC) 35% + 6단위 세변변경(CTSH)) 채택

#### [RCEP 실질적 완성]

올해 1월 발효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불참을 선언한 인도와 CEPA 개선협상을 가속화함으로써 RCEP의 실질적인 완성을 추진

#### [비관세장벽 완화 및 애로해소]

CEPA 개선협상을 통한 규범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인도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인도와 협의채널을 유지하여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비관세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

#### [공급망 등 신통상 협력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백신, 디지털 협력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함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2. 관세청-산업부,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힘.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임.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수입요건 확인 대상 전동기]**

- 적용대상: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는 저압삼상유도전동기(수입)\* 600V이하의 일반용 3상농형유도전동기로서 0.75kW이상 375kW이하까지이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에 따른 삼상유도전동기 분류에서 유형 I, II에 해당하는 것

**[수입전동기 물품검사시 확인사항]**

구분	확인사항	세부내용
수입요건 확인 신청 전동기	수입요건 확인신청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품목, 모델명, 용량, 수량,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등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준수여부 확인	효율라벨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효율신고 여부, 명판 기재사항 등
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으로 수입 신고한 전동기	효율관리기자재 비대상 해당여부	품목, 용량(0.75kw미만) 등 삼상유도전동기 비대상 해당여부 등